

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4. 20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. 4. 21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8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0. 5. 1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중육)

개정이유

- 조성된 기금을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예치함에 있어, 금융기관의 범위를 시와 금고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하여, 기금의 운용·관리에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함
-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개정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기금의 운용·관리 -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률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 운용·관리한다.(안 제2조)
- 기금결산 - 기금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(안 제6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난 제77회 임시회시 기금관련 조례 내용 중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도록 한 것을 이자수익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도록 조정하였는데 다시 시금고로 조정하는 이유는? ○ 지난번의 행자부 지침은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77회 임시회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개정하였으나, 기금관련 부서의 지침 유권 해석상의 차오와 경기도의 승인거부로 개정하는 것이며, 기금에 한하여 시금고에 예치하고 별도로 계약해야 함 ○ 확대한 것이나 기금에 한해서만 시금고로 해야 하며 기금을 예치하기 위하여 부서 별로 시금고와 계약해야 함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 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 음

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311호
의결년월일	2000. 5. 3 (제78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4. 20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조성된 기금을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예치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범위를 시와 금고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하여 기금의 운용·관리에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함
-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개정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기금의 운용·관리 -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률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 운용·관리한다.(안 제2조)
- 기금결산 - 기금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(안 제6조)

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"시중 금융기관"을 "시금고"로 한다.

제6조 중 "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"를 "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기금의 설치 및 관리) ③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<u>시중 금융기관</u> 에 예치하되 적 립기금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적립원금과 이자 수입금으로 구분하여 예치 관 리·운용한다.	제2조(기금의 설치 및 관리) ③..... <u>시급고</u>
제6조(결산 및 보고) 시장은 매회계연도 <u>총납폐쇄</u> <u>후 3월 이내에</u> 전년도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서 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부천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 다.	제6조(결산 및 보고) <u>총납폐쇄</u> <u>후 80일 이내에</u>